2001년도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

2001. 12. 7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11월 21일 경주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01년 11월 27일

다. 상정일자 :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(2001.12. 7)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자 설명요지(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정의협)

가. 제안사유

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 등 재해예방, 재해응급대책, 재해복구, 기타 재해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고 97년도부터 기금조성을 시행하여 재해예방사업과 기금을 적립하고 있음.

나. 주요골자

○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의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/1,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토록 규정되어 있어

○ 주요 사용처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,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,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비에 사용함.

○ 기금조성은 '97년부터 조성하여 현재 1,098,000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, 2001년도 총기금 1,295,000천원을 조성하여, 2001년도 조성분 394,000천원중 197,000천원 정기예탁하고 잔여금 197,000천원은 방재정보시스템장비설치 및 안강곤실소하천 보수공사외 7개 지구에 집행하였음.

○ 2002년도까지 기금조성계획은 총 1,556,000천원(2002년도 출연금 418,000천원, 2001년도 이월금 1,098,000천원, 예상이자 40,000천원)을 확보할 계획임.

3. 질의답변요지 : 특이사항 없음.

4. 토론요지 : 없음

5. 소수의견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